의 안 번 호	제 124 호
의결 년월일	1999. 9.30.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발 의 자	송 인 옥 의원외5인
제 출 년 월 일	1999. 9. 8.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신 의 장

제목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붙임 : 의안 1부. 끝.

발 의 자: 송 인 수 (인)

(찬 성 의 원 서 명 : 붙 임 참 조)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안경위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9. 8 송인옥 의원외 5
· 회 부 일 자 : 1999. 9. 21
· 보은군의회조례심의위원회 심사 : 1999. 9. 28
· 상 정 일 자 : 1999. 9. 30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

· 우리 군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 지방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주요골자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토록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규정함 (안 제6조)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58조에 의거 의원 입법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4. 입법예고 : 생략 (행정내부사항으로 생략)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보은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진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①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산안 승인 요구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발의 서명

의 원 명	서 명	날 인
金緝鎭	[illegible]	
우재명	[illegible]	
조강환	[illegible]	
이규택	[illegible]	
정기형	[illegible]	